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2(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이하 ‘유예’라 한다)라 함은 학칙에서 정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예기간) ① 유예는 1회에 1개 학기씩 최대 2개 학기 동안 할 수 있으며, 1개 학기 종료 후에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해당학기의 졸업자로 자동 처리한다.

③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의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유예절차) ① 유예 신청 시기는 학기말 전공 졸업사정회 이전에 하며, 전공을 경유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서식1]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제5조(신청자격) 유예 신청자격은 정규학기 이상을 마치고 졸업학점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제6조(유예조건) ① 유예자는 유예 기간에 휴학이나 자퇴를 할 수 없다.

② 유예자는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③ 유예자의 등록금은 본교 학칙 시행세칙 제35조 3항에 의거 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유예자의 졸업처리) 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유예를 한 경우 다음 학기 졸업 시점의 졸업기준으로 재 사정하지 않으며, 유예확정 시기의 졸업사정 결과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예자 중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한다.

제9조(증명서) ① 유예 학기 중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를 발급한다. 단, 재학 증명서 및 휴학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되,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유예 학기 승인일로부터 졸업일 전까지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③ 유예 학기 중에는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

4-1-42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전공		학번	
성명			
1. 유예사유			
2. 유예학기			
3. 수강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학점 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함	
4. 신청횟수	<input type="checkbox"/> 신청횟수	1회차 / 2회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재)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보호자:	(서명)
		지도교수:	(서명)
교학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서

전공		학번	
성명		연락처	
1. 유예 취소사유			
2. 졸업희망일			
위 사유로 인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교학처장 귀하			